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9

다. 상정일자 : 2005. 12. 9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나. 제안사유

-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관련사항을 제정 화순군지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됨.

○ 위원회 기능(안 제3조)

- 군지 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원고 심사, 수록사항 결정 등

○ 상임위원(안 제5, 6조)

- 위원 중에서 1명을 두고 군수가 위촉하며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됨.

○ 실비보상(안 제11조)

-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5급 5호봉, 보조원은 7급 5호봉 상당액의 월급과 동직급에 맞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위원의 해촉(안 제12조)

-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사회·경제·역사·문화 등을 총정리한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예산이 수반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토론자 : 이선 의원

-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1조”로 하며 “비상임위원”을 “위원”으로 수정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불 임 :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179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 12. 9

제 안 자 : 이선 의원

1. 수정이유

- 상임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1조”로 하며, “비상임위원”을 “위원”으로 함.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1조”로 하며, “비상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p>제11조(실비변상) ① <u>상임위원회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5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5호봉 상당액의 월급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회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u></p>	<p>제11조(실비변상) ① (삭제)</p> <p>제11조(실비변상) <u>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u></p>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상임위원의 직무)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반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7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직무는 위촉 반음과 동시에 시작되고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서기는 군지편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
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기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